

제 65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4월 17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4월 17일 상오 시 2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채적 16명중 출석의원 11명
 결석의원 김경인, 박두순, 강영락, 조양순, 김상태 의원
6.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7. 의사일정
 ◆ 부의안건
 - 1)단기 4288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 2)목포시 교육위원회비용 변상조례 개정의 건
 - 3)재산매각 처분의 건
 - 4)재산취득의 건
 - 5)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의 건
 - 6)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의 건
 - 7)단기 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8)제 8회 시정감사 보고의 건
 - 9)시유재산 관리의 건
8. 토의사항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건

◇정 응 표 의원

- 전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일은 성원미달로 유회하게 되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며 금일도 일부계통 의원들의 불참은 이해키 곤란한 일이다. 의장은 결석의원들의 정당한 수속이행 후 불참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사회자의 입장에서 심히 미안하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정당한 수속을 밝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 상 대 의원

- 정 의원의 발언과 같이 일부불참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개재되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며 비트 하였던 추경예산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는 것이니, 참석할 것을 극력 종용하여 전원 참석리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 것이 가할 것 같다.

◇김 창 희 의원

- 전반 교육청 예산안을 비트하였던 동기는 교육사업을 지연시키자는 술책이 아니였고 시민의 부담과중을 우려하였기 까닭인 것이다. 그러나 금반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전반의 무모한 예산과는 달리 시민의 부담이 2천5백만원 밖에는 안되는 것이며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문사 내무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 것이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본 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김 성 균 의원

- 찬성발언이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 김창희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발언하겠음. 과거 본 의원도 본 예산

비트에 가담하였던 일인인 것이나 그 당시는 너무 무모하고 가공전인 수가 이였고 원조 자재등을 예산 면에 나타내도록 하였으나 극력 반대하기에 비트하게 되었던 것이다.

- 그러나 금반은 이를 시정하여 추경으로 제안된 것이기에 내무위에서도 무수 정 통과를 보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인데 금반의 불참의원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켜 집행부 측에 생색은 다 써놓고 출석치 않은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천 철 수 의원

- 본 건을 통과시키기 전에 항간에 떠돌고 있는 (와이로)운운의 사실여부를 규명한 연 후로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의장 김 삼 성

- 이 문제는 사석에서 타협할 기회를 만들기로 하겠다.

◇정 응 표 의원

- 현금 적령아동으로서 1,200여명의 불취학자를 내었음은 한심 지사라 하겠으며 그 원인은 사친회비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 해당자에 대하여 이를 면제토록 하여 의무교육의 혜택을 부여할 것을 조건부로 할 것을 동의에 참가한다.

- 동의집 수락 김창희 의원 동의 표결결과 재석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교육위원회 재산취득 건 (중앙교장, 서부교장, 교육감 관사)

◎ 목포시 교육위원회 재산매각 처분의 건 (중앙교장, 서부교장 관사)

◎ 목포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 개정안

◇김 성 균 의원

- 본 건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회의규칙 제 47조의 규정의 절차를 밟은 연후 회부하여야 될 것이다.

◇김 일 섭 의원

- 지금부터 산회후 각 감사반 별로 심의한 연후 내무위원회에 회부기로 하고 내일 종합 보고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김 창 희 의원

- 당분간 휴회하였다가 속개할 것을 개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개의표결 결과 - 재석 11명중 가 8표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10분간 휴회 선언하다. (하오 12시 30분 현재)

- 회의속개 선언하다. (하오 12시 40분 현재)

◎ 시유 재산 관리의 건 (상대 부지)

◇총무과장 장 건 식

- 제안이유 설명하다.

◇김 일 섭 의원

- 본 건 계속 무료대여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전문한 바에 의하면 저반 시내 유력한 기관장 회의석상에서 시장과 상대학장 사이에 국유지니 사유지니 하는 문제를 상당한 논쟁까지 전개되었으며 심지어는 모욕된 언사까지 썼다고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상대학장은 사유지를 농락한 처사라 하겠으며 이해키 곤란한 것이 있고, 이에 대하여 정식 사과가 없다하니 그 부지에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장님에게 그 진상을 청취한 연 후 처결토록 하자.

◇김 남 진 의원

- 서면으로 정식 사과를 듣도록 하자.

◇의장 김 삼 성

- 김일섭 의원의 동의에 (정식 사과를 들을 것을 전제)를 첨가시킴이 가할 것 같다.

- 동의집 수락 표결결과 김일섭 의원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시세 조례개정의 건

◇재무과장 이 현 두

- 제안이유 설명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한 연후 본 회의에 상정케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오전회의 휴회 선언하다. (하오 12시 5분 현재)

- 속개 선언하다. (하오 2시 45분 현재)

◎ 단기 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김 일 섭 의원

- 문사위원회 및 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경위 설명

◇김 상 대 의원

- 중앙 도매시장 운영 문제에 있어서

1) 계약면으로 보면 일금 100,000환의 보증금을 시에 납부하게 되었는데 상금 미납된 이유여하.

2) 4288, 4289년도 사용료 150,000환이 전액 미납된 이유와 4288년도 대차대조표가 부합되어있지 않은 이유여하.

3) 4289년도 사용료로서 시장으로부터 수표 4만환이 상공계에 제시되었는데 그 행방여하.

◇산업과장 정 태 로 답변

- 보증금이 미납되어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며 앞으로 자세한 것을 조사하여 추진시 키겠으며 88, 89년도 수수료에 대하여는 누차 서면 또는 구두로 독촉도 한바 있어오나 미진되어 미안합니다. 수표 4만환의 행방에 대하여는 본인은 전해 모르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계당시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수도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상당액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갈수기의 배수불공평에서 생기한, 당초조정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깨끗이 정리함과 아울러 대장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

◇명 남 철 의원

- 자치단체의 보조는 내시가 있어야 예산 면에 계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숫자를 계상한 것인지 답변을 바란다.

◇이 건설 과장 답변

- 현금 한천이 계속되어 수도사용료 징수에 애로가 심합니다. 그리고 대장

면에 미수된 분은 기본요금인 것이며 결손처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사의 결재를 득하여 적의조처 하겠습니까. 명 의원이 물으신 보조관계는 상수도 및 토목비 보조로 틀림없이 내시가 있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단기 428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대규모로 추진중인 상수도 확장공사에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나 흑자결산을 내놓았음은 타 시에 모범될만 한 것으로서 극구 찬양 하고싶다.

- 제 의원들이 10여일 간의 감사기간을 통하여 심심 검토한 것이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재석 1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역시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10여일 간을 통하여 심심 검토한 것이고 금일로써 임기만료로 된 신 교육감의 책임완료를 결실 짓기 위하여 그다지 만족할 만한 것은 안되나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 삼청

◇김 일 섭 의원

- 본 건은 감사 보고시에 병행하여 통과시키기로 보류할 것을 개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 표결결과

개의 재석 11명중 가 3표 부결되다

동의 재석 11명중 찬성 8표 가결되다.

◇명 남 철 의원

- 교육위원회 추경예산 통과와 부수하여 유폐되고 있는 (와이로)문제를 철

두철미 조사하여 그 진상이 드러나면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여 문책키로 하되 그 보고는 차기 본회의에 위원장이 행하기로 하여 위원장 자신이 보고를 피하는 경우는 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전제로 조사위원 3인을 구성하되 그 지령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조사위원으로 명남철, 김창희, 정응표 의원을 지명

◇김 성 균 의원

- 무제한 회의시간 연장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의원 긴급동의

- 본 의원이 저반 우체국 청사문제로 상경하였던 결과를 보고하겠다. 현금 공전식 전화기가 입하도중에 있는데 당 목포시에는 기술단이 조산한 결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시청 앞 구적에 단층이라도 청사를 건축하면 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금의 상태로는 자칫하면 군산우체국에 뺏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청사복구는 명년도 예산에야 계상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여 공전식 전화기를 뺏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김성호 민의원과 타협한바 있었는데 앞으로 정부 추경예산도 있을 모양같으니 물(勿)실호기하여 중앙에 교섭단을 파견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민의원 1인의 언질로서 경솔히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하오나 어떠한 기회에 체신부장관이 목포에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한다.

- 김상대 의원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교섭의원으로는 김상대, 김성균 의원을 지명

◇김 일 섭 의원

- 회기 1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재석 11명중 가 4표 부결되다.

◎ 제 8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 제 1반 담당 의원

- 1)재무과 관계에 있어 이재성 외 7명 고발사건에 대하여 우금 결말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이며 취득세의 과징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란다.
- 2)호적 병무과 전용 직인을 비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공여하여 줄 것을 절실히 요망된다.
- 3)대성 1, 2, 양, 북교, 남교, 호남동등 대체로 양호하나 대성 2구, 양동의 동정세 징수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여주기 바란다.
- 4)총무과 시정계는 말은바 사무량에 비하여 인원배치 과소하다고 사료되오니 직원의 증배를 요청된다.
- 5)88년도 법인 동정세 조정액 2,371,842환 중 겨우 25%를 징수하여 동 보조 예산액에도 미달하였음은 시정계 징수담당자의 독려부족이라고 사료된다.
- 6)적십자회비 징수에 있어서 시내 중심 등인 영해동에서 132,500환을 미납하였음은 시정계의 독려불철저에 기인한 것이라 사유된다.
- 7)국민반상회 복명서에 상사의 공람 흔적이 없음은 해 사무에 관심이 부족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제 2반 담당 김 상 대 의원

- 1)가축시장 : 수도와 전기시설이 전무하니 예산이 허용하는 한 설비할 용

의는 없는가.

- 2)도살장 : 건물이 부패되어 있으니 수선할 용의는 없으며 시소유전 100여평을 이로면민에 무상경작 시킨 이유여하.

- 3)남교동 시장 : 시장사무소 적가점포(자리) 대지료 수입이 전무한 이유여하.

- 4)죽교동 시장 : 시장을 확장시킬 용의는 없는가.

- 5)항동 시장 : 시장사용료 수입에 박차를 가할 것. 채광선이 전무하여 막대한 전기료를 낭비하고 있으니 수선할 용의는 없는가.

- 6)죽, 무안, 죽교 1, 2, 3 유달, 용당, 산정 1, 2구동 등 대체로 용호하나 죽교 4구동의 증빙서류가 전무로 인하여 사무감사 실시불능 이였고 만호동은 전회계서기 박병선이 174,000여환을 횡령착복 하였고 6, 25 위문대 대금 서술을 동 경비에서 유용하였으며 각종공문서가 사장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주무계는 차후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제 3반 담당 김 일 섭 의원

- 1)노동계 직원의 중증치와 예산의 증배를 요망한다.
- 2)서산 온금 죽교 5구동 등 대체로 양호하다.

◇제 3반 담당 천 철 수 의원

- 1)시립병원 사 수선을 시급히 요구한다.
- 2)병원의 설비가 부족하다 즉, 심지어 청진기까지 차용(借用)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대책여하.
- 3)부패약품의 다량 보유하고 있는 이유여하.
- 4)무료진료권이 과도한데 전부 시를 경유하는가.
- 5)대성병원의 약품수불 대장정리가 지극히 소홀함.

◇제 3반 담당 명 남 철 의원

- 교육청 관계에 대하여

1)국고보조금 : 2,052,514환을 저은(저축은행)에서 지불받아 9일간의 간격을 두어 조흥은행에 입금한 사실에 대한 이유

2)영선비 지출에 443,000환의 영수인이 무(無)한 이유여하.

3)중앙 국민학교 신설입찰에 있어서 1,000,000환 입찰자가 있었는데 1,399,000환과 계약한 이유여하.

4)광주 거주 나경민에게 8월 24일자 17,980환을 지불하여 9월 15일에야 영수시켜 25일간 유용한 이유여하.

5)공사 입찰시 계약보증금 수지(收支)명세표 전무의 이유여하.

6)그 외 국채 참가소화의 흔적이 없으며 특히, 원천과세의 부정사실을 지적한다.

7)동명동과 영해동을 보았는데 동명동의 사무처리가 타 동에 비하여 극히 저하되어있다. 차후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대체로 제8회 시정 감사보고는 끝났으니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명4월 18일에 청취기로 하여 금일은 이대로 산회할 것을 선언하다.

(하오 5시 3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4월 19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 65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4월 18일 상오 10시 5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4월 18일 하오 3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박두순 의원
6.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유창덕
7. 의사일정

◎ 제 8회 시정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 답변

◇서기 박찬대

- 박두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가원 낭독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1)김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법인 동정세의 징수부진에 있어서는 현금재무과에서 징수중에 있으나 앞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여 차후로는 완정을 기하겠습니다.

(나)영해동 적십자회비 미징수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5, 1정 부통령 선거에 직면하여 각종 공과금징수에 애로가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 그리되었으나 차후 여사한 사례 전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국민반 운영관계서류는 그 후 즉시 추완하여 두었습니다.

(라)대성 2구와 양동의 동정세 징수부진은 동장선거 관계로 일시침체 되었

었으나 차후 철저히 독려하겠습니다.

- 2)김상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죽고 4구동 회계서류 행방에 대하여는 사직당국과 모종협의로 인하여 조사차 압수한 것입니다.

(나)만호동의 부정사실에 대하여는 시 행정부에서도 감사한바 있고 하오니 금명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여 보증인에게도 연락하여 선처하겠습니다.

- 3)명남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동명동 행정사무, 침체에 대하여는 차후 가일층 지도에 주력하여 타 동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1)김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이재성 외 7명의 공금 횡령사실에 대하여는 목하 사직당국에 상의중에 있으며 수속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취득세의 과정에 있어서는 세법개정에 수반하여 등기물과 구분 부과하던 것이 지금은 전적으로 실가격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써 그 부과에 있어 공정을 기하게 될 것이고 징수도 잘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산업과장 정 태 로 답변

- 1)김상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가축시장은 자립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예산이 수립되면 추가예산이라도 하여 불편이 없도록 설비하려 합니다.

(나)도살장 문제에 있어서는 가축시장과 같이 자립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급한 수선이 필요한 것도 절감하여 금년도 예산에 수선비를 계상하였으니 수입면을 보아 시급 수리에 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남교동 시장문제는 매월 조정액을 통지하고 현장직원으로 하여금 독려도 하여왔으나 납부 의무자의 무성의에 의한 것입니다. 차후 시장주임을 엄독하여 5월중에는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항동 시장에 있어서는 채광선 설비에 있어 금년 2월에 채광을 완전히 하게 하기 위하여 수선을 일차 하였으나 그 완전을 기하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연구를 가하여 선처하려 합니다.

◇사회과장 김 연 수 답변

- 1)김일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노동계 직원증치 문제는 당연한 말씀이나 현금 상지 하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한 건축예산으로 운영하는 당시의 형편을 참작하여 주 시기 바라며 직업소 인건비 보조가 하령(하달)되었으니 해직원을 차(此)에 겸 무 활용하려 합니다.

(나)예산 증배문제는 당분간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 2)천철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시립병원 원사수리에 대하여는 역시 그 긴요성을 통감하는 바이오나 차 역시 예산관계로 시공치 못하는 바이며 우선 예산에 계상된 10만원 범위내에서 입원실을 수리하려 합니다.

(나)병원비품 설비 역시 시립병원은 독립예산주의를 택하고 있는 관계이며 청진기는 완비되었다고 합니다.

(다) X광선기는 현금 개인소유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병원비품의 전구파손으로 기인한 것이며 중앙으로부터 도에 무상배부 되었다는 내시가 있으니 근추심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라)부패약품 보유이유는 6. 25동란후 수복당시 해군이 상륙하여 괴뢰군으로부터 압수하여 병원에 인계한 것인바 우금 폐기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상사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처분하고 공병을 매각처분 하려합니다.

(마)무료진찰권 발급에 대하여는 일체를 시 사회과에서 발행하나 고아원 등 후생시설에서 요청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으로 시를 경유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대성병원약품 수불대장정리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수시 다량의 약품이 수배되지 않고 극히 소량임으로 소홀히 취급된 것 같습니다. 즉시 완비하겠습니다.

◇호적병무과장 박 규 성 답변

- 1)김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호병과 비치전용 관인에 대하여는 객년 1월 5일자로 본도에 신청한바 있었으나 일관청에서 2개이상의 직인을 사용함은 직인관수상 타당치 않다는 이유로 각하 되었는데 최근 광주에서는 호병과 전용 관인이 비치되었다는 소식이 있으니 그 실지여부를 조회하여 선처하겠습니다.

◇교육청 학무과장 유 창 덕 답변

1)명남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형편이나 본인이 아는 바로서는 그러한 부정은 있을 리 없다고 보아집니다.

◇명 남 철 의원

- 학무과장은 사실상 회계관계는 모를 것으로 보아지니 책임있는 답변은 못하리라고 본다. 그 당시의 책임자인 현 무안교육구 서무과장 김용준씨를 본 회의에 출석 답변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칠청까지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작일 명남철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한 무성의의 교육청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시 의회의 결의로써 고발조치라도 하였으면 한다.

김용준 전 서무과장을 금일 하오1시까지 출석시킬 것을 동의에 첨가한다.

- 동의집 수락

◇김 성 균 의원

-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에 의하면 학무과장이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 명남철 의원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창 희 의원

- 1)만호동 직원 공급 횡령자에 대한 신원보증인은 누구이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조치여하.

- 2)재무과 고발자에 대한 것도 동일.

- 3)중앙도매시장의 사용료 미수입에 대한 설립자의 주소 성명 등을 밝히라.

◇김 성 균 의원

- 재무과 직원의 유용 착복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은 불필요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김 경 인 의원

- 1) 부정 또는 정실적으로 차압, 징수, 결손등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와 거래한 업자로서 방대한 물품대를 지출하면서 87년도부터 현금까지 일체의 세수입 없는 것은 어떠한 이유이며, 과반 오도막에 10만환의 세금미납에 60여만환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차압을 하였고 금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8명은 납세의무자 400명으로부터 1년기 개월에 공하여(1년 몇 개월에 걸쳐) 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는 주무과장과 더불어 시장의 책임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2)징수장려금의 성질 목적으로 보아 정당 지급이 안 되었다고 본다.

- 3)남교동시장 화재문제인데 산업자금 호당 30만환과 후생 주택문제등 사무처리가 소홀하여 기회를 일실시킨 책임을 묻는다.

- 4)신원 보증인 미비자의 재확인 요청

- 5)시 일반회계에서 자유당 중앙당부 접대라하여 17만여환이 지출되었다. 누가 왔기에 꼭 접대할 필요가 있었는가.

- 6)직원신원 보증서에 첨부한 재산증명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었다.

◇강 영 락 의원

- 1)각 업자로부터 시에 공급한 물품대를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수령한 것을 목격한 것이 비일비재인데 이의 시정을 요망한다.

- 2)시민들이 내놓은 세금을 유용 착복한 사실을 1년간이나 묵인하였다는 점 일책(문책)아니할 수 없다. 그 당시의 주무과장이 누구인지 밝히기 바라며 최고책임자인 시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

◇김 일 섭 의원

- 변방동의 동정세 징수 부진을 절감하였다. 동정세 합동 차압단행시 동직원에게 차압공무원증을 교부할 용의는 없는가.

◇정 응 표 의원

- 1)노동행정의 사무량이 방다함에 반하여 노동계 직원 1인의 배치는 너무 무리한 조치이다. 조속한 시일 내 증원을 요청하며 현재 배치되고 있는 주무자의 인격을 살필적에 너무 무능한 사람인 것이다. 그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며 인사행정의 줄렬을 지적하는 것이다.
- 2)묘목대를 무려 70만환을 지출하였는데 그 대가의 묘목은 없다. 차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없는가.
- 3)위생사무소의 전화가설을 요망한다.
- 4)마사의 전등 특선가설을 요망한다.
- 5)양동아사자 발생사실은 확인한바 있는가. 그 후의 대책은 여하히 수립하였는가.
- 6)죽교 4구동 사류지의 활용을 요망한다.
- 7)시정감사 기간 중을 통하여 직시하였으나 청원의 중식시간의 불이행을 느꼈다. 이후 감독의 철저를 요망한다.
- 8)교육청은 교육위주로서 학무과 중심이어야 될 것임에 반하여 서무과 위주로 된 감이있다. 학무과에 전화가설을 요망한다.
- 9)도서관 시설이 빈약하다. 시급 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김 상 태 의원

- 시립병원 운영에 있어 약제사가 개인약방을 경영한 사람이다. 시판에서 1,000환짜리를 1,200환에 파는 모리를 한다. 이의 인사교체 용의는 없는가.

◇명 남 철 의원

- 1)공동 하양장은 시민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시 세입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적자를 내면서까지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가.
- 2)시립병원은 적십자병원의 예와 비할 때 수인의 호구지책을 위한 후생 시설인 것 같은 감이든다.
- 3)치도는 돌만 부설하는 것이 치도라고 보는가.
- 4)청소차의 정거시간을 연장시킬 것을 절실히 요청된다.

◇김 일 섭 의원

- 오전 회의 휴회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재석 15명중 찬성 12표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오후회의 속개 선언하다.

(하오 2시 현

재)

◇총무과장 장 선 식 답변

- 1)김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만호동 직원 비행직원의 신원보증인은 윤규황, 박종안, 김경현의 3인입니다. 유용액은 안분배당할 계획입니다.

- 2)김경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신원보증서 미제출자가 현금 10여명이나 거개, 노무원, 운전원등 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월 말일까지 정비안된 자에 대하여는 신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자유당간부 접대비조는 객년 2월 중에 중앙당부 부차장과 본도 경찰국장이 동도래시 하였을 적에 접대한 것입니다.

(다)직원신원보증서에 자산증명 수수료 미불분에 대하여는 즉시 추완하여 두었습니다.

- 3)강영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물품대를 관계업자에게 직불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간접적으로 수령한 것은 친지의 입장이라든가 세금납부시 등의 경우일 것이나 차후주의를 환기시켜겠습니다.

- 4)김일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동직원 차압공무원증 교부에 대하여는 좀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예를 보아서 차후 시 주사금을 배치하여 이점 고려하겠습니다.

- 5)정응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가)중식시간 려행은 차후 엄독하겠습니다.

(나)도서관 확장은 적당한 시기에 선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 현 두 답변

- 1)김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 고발인의 신원보증인 명단은 형편상 추후 발표하여 드리겠으며 사직국 중에서는 목하 중인 심문중에 있습니다.

- 2)김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목하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최고장을 내고 있으니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김경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실적으로 차압, 징수 결손 등의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체납자의 성분을 따져볼 때 납세할 만한 능력이 있어도 체납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있음으로 차압공무원이 수시 이를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결코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와 거래하는 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재무과를 경유하여 나가게 되고 있음으로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전적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사한 사례는 없을 것이나 있다고 하면 차후 유의하겠습니다.

부정사실을 야기한 직원은 거개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그 당시 근무하던 임시직원들이 12월말로써 해고할 것을 예측하고 여사범법행위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부시장 답변

- 강영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 부정사실에 대한 전모는 기위(기회) 도 당국에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고려 중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 연 수 답변

- 1)김경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남교동시장 이재민 건축자재 알선문제는 과거에 중앙에 교섭한 듯 하오나

가망이 없습니다. 금년도 ICA자금으로 배정될 재건축주택이 오면 사정이 허용하는 한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 2)정응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현금 시장님 와병중이시고 인사문제이니 만치 확답키 곤란한 문제이나 집행부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청소사업소 전기 특설문제는 무려 시공비 약 4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당분간 곤란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다)양동 아사자 발생한 문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하였던바 금년 71세의 노인으로서 노쇠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김상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립병원 약제사문제는 내부조사중에 있으니 상사에게 구신하여 조치하려 합니다.

- 4)명남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격리병사 신축문제는 자재도착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1)정응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가로수 보호문제는 금년까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죽교 4구동 사유지는 작년에도 석벽상부에 철조 및 문 등을 수리하였으나 부근주민으로 부주의에 의한 것이나 차후 철저 단속하겠습니다.

- 2)명남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공동하양장은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적자를 내면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치도 문제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동장회의시에 도로가 주택지반보다 높은 길을 깎아서 사리를 부설하도록 지시하겠으나 동민들의 부주의로 원만한 성과를 못 거두었던 것입니다.

◇교육청 전 서무과장 김 용 준 답변

- 명남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1)국고보조 유용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도에서 사전 공제조가 있고 그로 인한 보충관계 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2)국채대금의 대장정리문제는 지적을 받고 보니 미안합니다.

3)중앙 국민학교 낙찰에 있어 최저 입찰자에게 낙찰 시키지 않는 이유는 입찰금액의 정정 및 자신 없는 입찰 등을 피하는 수단으로 부득이 그리된 것입니다.

4)광주 나경민씨의게 지출된 금액은 강사 사례수단으로서 영수증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 외별도 초안참조)

◇강 영 락 의원

- 교육청 사무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작일부터 질의전이 전개하였으나 관계자의 보고 및 답변에 의하면 당무자의 사무태만 내지 착오에서 기인한 것 같다.

모직원의 현금 7만환의 강요문제 등 관계직원의 진퇴문제를 결의한다면 작일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의회 측의 위신도 있는 것이니 이점 신교육감 취임시 상의키로 하고 끝으로 재무과 의혹사건에 대한 부시장의 복안을 듣고 싶다.

◇이 부시장

- 시 행정의 명량화를 기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반 야기된 재무과 일부직원 부정사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하여는 진실로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단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자의 인사문제는 상사와도 상의하여 급속 조치하려합니다.

◇김 남 진 의원

- 금반의 시정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측에서도 차후 시정할바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믿어진다. 그리하오니 이로써 대 집행부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재적 15명중 찬성 9명 가결되다.

◇서기 박 찬 대

- 시내 탕옥조합(목욕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낭독.

◇의장 김 삼 성

-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 강평 과거 초대의회로부터 8회에 공하여 실시한 시정감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보된 점도 불무하나(없지 않으나) 금반의 재무과의 부정사건 및 교육청의 과오등 실로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 차후 집행부에 있어서는 금반의 시정감사를 통한 제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충분히 음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맹성을 촉구하면서 이로써 강평에 가름합니다.

- 폐회 선언하다. (하오 3시 30분)

- 끝이어 폐회식이 있었음.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4월 20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김 일 섭

작성자 서기 주 도 식